

의안번호	2202012
의 퇴 인	이인선 의원
회 답 일	2024. 11. 1.
추 계 번호	24F22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【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】

I. 재정수반요인

연번	조·항(조제목)	주요내용	비고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 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○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포함 －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현행 반도체 등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8개로 확대	
2	안 제25조 (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	○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－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한 투자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세액공제 신설 － (공제율) 기본공제: 기업규모별로 1~10% - 추가공제: 직전 3년 평균 초과분의 3% － (적용기한) 2028.12.31.	
3	안 제144조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○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이월 공제대상 세액공제에 포함 － 이월공제 기간: 10년	

II. 미첨부 근거 규정 및 상세 사유

1. 근거 규정

연번	조·항(조제목)	미첨부 근거 규정
1	안 제10조제1항 (연구·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2	안 제25조 (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3	안 제144조 (세액공제액의 이월공제)	제3호: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2. 상세 사유

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인공지능을 포함하고,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하여 이월공제를 허용하는 경우, 소득세 및 법인세수의 감소가 예상됨(안 제10조제1항 등)
 - 개정안은 국가전략기술의 분야를 현행 7개 분야에서 인공지능을 포함한 8개 분야로 확대(안 제10조제1항)
 - 국가전략기술*은 연구·인력개발비 세액공제(이하 'R&D 세액공제')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에서 일반기술 및 신성장·원천기술 대비 공제율을 우대하여 적용
 - ※ 국가전략기술이란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적 중요성이 인정되고 국민경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기술을 의미

[표 1]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술별 공제율 비교

(단위: %)

	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중소기업	25	30	40
	중견기업	8~15	20~25	30
	대기업	최대 2	20	30
통합투자세액공제	중소기업	10	12	25
	중견기업	5	6	15
	대기업	1	3	15

- 국가전략기술 분야: (현행) 반도체, 이차전지, 백신, 디스플레이, 수소, 미래형 이동수단, 바이오의약품 → (개정안) 상기 분야에 인공지능 추가
- 분야내 구체적인 기술은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[별표 7의2]에 규정
-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도입하기 위하여 투자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신설(안 제25조 신설)
 -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: 「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*을 활용하여 상용으로 타인에게 정보통신자원을 제공하는 서비스
 - ※ 클라우드컴퓨팅: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나 수요 변화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신축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정보처리체계를 의미
 - 공제율: (기본공제) 중소기업 10%, 중견기업 3%, 대기업 1%
(추가공제) 직전 3년 평균 대비 초과분은 3% 추가공제
 - 적용기한: 2028.12.31.

- 개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대하여 이월 공제를 허용(안 제144조)
 -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10년간 이월공제를 허용
- 개정안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분야 확대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국가전략기술로 규정되는 인공지능의 범위에 대한 정보와 해당 분야의 R&D 및 투자규모를 바탕으로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개정안에 따라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될 인공지능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어 대상 범위를 특정하기 어려움
 - 참고로, 인공지능은 현재 신성장·원천기술에 포함된 지능정보 분야의 세부분야로서 동법 시행령 [별표 7]에 구체적인 기술범위가 규정되어 있으나, 개정안에 따라 해당 기술의 국가전략기술 포함여부는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없음

[표 2]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상 신성장·원천기술의 인공지능 범위

기술종류	내용
학습 및 추론기술	다양한 기계학습 알고리즘, 딥러닝, 지식베이스 구축, 지식추론 등 학습 알고리즘과 모델링 조합을 통해 지능의 정확도와 속도를 향상시키는 소프트웨어 기술
언어이해 기술	텍스트, 음성에서 언어를 인지·이해하고 사람처럼 응대할 수 있는 자연어 처리, 정보 검색, 질의응답, 언어의미 이해, 형태소 및 구문 분석 등 언어관련 소프트웨어 기술
시각이해 기술	비디오, 이미지 등에서 객체를 구분하고 움직임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한 컴퓨터 비전, 행동인식, 내용기반 영상검색, 영상 이해, 영상 생성 등 사람의 시각지능을 모사한 소프트웨어 기술
상황이해 기술	다양한 센서를 통해 수집된 환경정보를 이해하거나, 대화 상대의 감정을 이해하고 주변상황과 연결한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는 등 자신이 포함된 세계나 환경을 이해하여 적절한 행동을 결정짓는 소프트웨어 기술
인지컴퓨팅 기술	저전력·고효율로 지능정보 학습을 수행할 수 있도록 컴퓨터 시스템 구조를 재설계하거나, 인공지능 알고리즘(algorithm) 처리가 용이하도록 초고성능 연산 플랫폼(Platform)을 제공하는 컴퓨터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술

- 인공지능 분야 기술에 대한 기업규모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 등의 현황, 공제규모 등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R&D 지출액 및 사업화시설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국세청에 따르면 R&D 세액공제와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·

원천기술까지는 구분이 가능하나, 분야별 공제실적은 구분되지 않음

- 참고로, 2023년 신고기준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(잠정치)은 다음과 같음

[표 3] 기술별 R&D 세액공제 및 통합투자세액공제 실적: 2023년 신고기준(잠정치)
(단위: 억원)

구분	일반	신성장·원천기술	국가전략기술
R&D 세액공제	23,760	9,492	11,968
통합투자세액공제	10,332	38	7,432

자료: 국세청 제출자료

- 개정안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 및 이월공제 허용의 세수효과를 추계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투자실적 등을 바탕으로 향후 투자액 및 이월공제 발생 등을 추정하여야 하나, 자료의 부재 등으로 이를 합리적으로 추정할 수 없음
 - 기업규모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 투자액 등의 정보가 필요하나, 해당 자료가 부재하여 향후 투자액과 공제발생 규모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
 - 참고로,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「2023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」에 따르면, 클라우드 산업내 기업의 투자규모는 2022년 기준 약 1조원 수준이나, 도입에 활용된 투자의 규모는 구분되지 않음

[표 3] 클라우드 사업을 위한 투자 현황: 2022년 기준

(단위: 억원)

투자유형	R&D	CAPEX	OPEX	기타	계
투자액	3,343	3,040	4,078	4	10,464

주: CAPEX는 기업 영업관련 고정자산의 유지와 수선 또는 신규구입 비용을, OPEX는 업무 지출 또는 운영비용으로 갖춰진 설비를 운영하는데 드는 제반비용을 의미

자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「2023년 클라우드 산업 실태조사」, 2024.1.

- 또한, 향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도입을 위해 투자한 법인의 이월공제 발생 시기 및 규모를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어 이월공제 허용에 따른 세수효과를 추계할 수 없음

Ⅲ. 부대의견

☐ 없음

Ⅳ. 작성자

☐ 성명

국회예산정책처	분석관	과장
세제분석2과	박정환	백경엽

☐ 대표연락처

성명	전화번호	이메일 주소
박정환	02-6788-4835	jhpark83@assembly.go.kr